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년)

21:00 (밤)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위령봉사회	4월 12일(일) 11:40	보스코홀
M.E.	4월 12일(일) 11:50	6교실
우리어머니 Cu.	4월 12일(일) 11:40	강당
사도들의 모후 Cu.	4월 12일(일) 11:40	식당
사목회의	4월 16일(목) 19:40	강당
울뜨레야	4월 19일(일) 11:40	강당

알림

- 4월 15일(수) 11시 강당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4월 24일(금) 저녁미사후 성시간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4/19) 청소 담당 : 6구역

성모성심회 성지순례

- 일시 : 4월 18일(토) 8시 30분
- 장소 : 단내 성가정 성지(경기도 이천)

동아리 회원 모집

- 위드보스코 축구(일 오후2시 영서중)
 - 마니피캇 합창단(화 오전10시 문화관)
 - 오카리나(화 오후6시 문화관)
 - 문의-최선영 마리아(010-7768-4888)
- ※ 통기타 강사님 모십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내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지계산서

2026.03

수입		비용	
계정 과목	금 액	계정 과목	금 액
봉헌금	191,495,210	선교비	76,282,643
후원금	893,820	성무활동비	24,540,600
목적헌금	4,255,100	교육비	470,000
기부금	683,741	행사비	73,359,400
부속기관수입	4,900,000	인건비	55,089,370
기타수입	1,254,556	운영비	29,009,320
운영수지차액	107,184,179	세금과공과	4,378,173
		복리후생비	3,899,500
		기 타	43,637,600
합 계	310,666,606	합 계	310,666,606

우리들의 정성(4월 1일 ~ 4월 7일)

교무금	6,725,000원
주일헌금	현금 8,656,000원 신자엽 133,000원
특별헌금	1,744,000원
감사헌금	안옥순 5만원 구상호10만원 이남식50만원 이수희 5만원 박상덕20만원 김연옥20만원 송명순 5만원 신종구 5만원 최은경 2만원 홍현자10만원 김수연10만원 김정자 5만원 황금옥10만원 유영숙10만원 임종윤20만원 이재권 5만원 지정수 2만원 정도선10만원 홍연실 5만원 이도아 2만원 이석구 5만원 꿀벌유치원 2만원 12팀 5만원 박동권30만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4/12	권태희	김영균	소영현 임종윤 김성해
4/19	임종남	장희석	이치현 정재호 민옥경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4/12	도현만	하재민	옥윤필 김용진
4/19	박용환	김영균	조홍환 도현만

성가번호 ♪ 입당 : 134 ♪ 예물준비 : 210, 342 ♪ 영성체 : 165, 187 ♪ 파견 : 132



주님은 종으신분 찬송하여 - 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3 편 사 목

제 1 장 교 구

제 1 절 행정부

제 1 관 교구청

제 142 조 (교구 직원 인사 및 보수 규정)

교구는 교구청과 본당 사목구 및 교구 소속 각종 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와 보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교회법 제470.471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41-47항 참조).

제 143 조 (교구 공문서 규정)

교구는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존에 관한 공문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교회법 제474조 참조).

제 2 관 평의회

제 144 조 (사제평의회)

1항 교구마다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평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교회법 제495-501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4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3항 참조).

2항 사제평의회는 교구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 관하여 법규정에 따라 교구장을 보필하는 자문기관이다(교회법 제495조 1항 참조).

3항 사제평의회는 교구장이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496조 참조).

제 145 조 (참사회)

1항 사제평의회 회원 중에서 교구장이 자유로이 임명한 6명 내지 12명의 사제들이 교구장이 규정한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 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임기가 지나더라도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교회법 제502조; 사목회의 교회운영의안, 33항 참조).

2항 참사회는 인사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제 146 조 (재무평의회)

재무평의회는 교회법 제5권 재산 관리법에 규정되어있는 임무 외에도, 매년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의 수입, 지출 예산을 준비하고, 아울러 연말에는 수입, 지출 결산을 감사한다(교회법 제492-494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4항 참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참조>